

신규 항만 기본계획(진촌항)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
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

2024. 2.

목 차

- 1. 주민 의견 수렴 1
 - 가. 주민 의견 수렴 개요 1
 - 나.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고·공람 1
 - 다. 주민설명회 개최 1

- 2. 주민 등의 의견 제출 여부 1

- 3.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결과 10
 - 가. 환경부 10
 - 나. 경상남도 12

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

1. 주민 의견 수렴

가. 주민 의견 수렴 개요

- 신규 항만 기본계획(진촌항)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음
- 또한, 관계 행정기관(환경부, 해양수산부, 낙동강유역환경청, 경상남도, 통영시)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을 제출하여 검토의견을 수렴하였음

나.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고·공람

- 공고 :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-31호(2024.01.09.)
 - 신문공고 : 경향신문(일간신문), 경남도민일보(지역신문)
- 공람기간 : 2024.01.09.~02.05.(공고일로부터 14일간)
 - 주민의견 제출기간 : 2024.02.16. 까지(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간)
- 공람장소 : 통영시 항만개발과(現 건설과), 사랑면사무소
- 공고·공람 사실 게시
 - 해양수산부 홈페이지,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

다. 주민설명회 개최

- 일 시 : 2024.01.16.(화), 10:30
- 장 소 : 사랑면사무소 2층 회의실
- 참석자 : 사랑면 이장, 어촌계장, 주민자치위원장 등 23명
- ※ 참석자 : 참석자 명부 참조[(그림 1-7~8)]

2. 주민 등의 의견 제출 여부

- 관계 행정기관 : 환경부, 경상남도 외 제출된 검토의견 없음
- 주민의견서 : 제출된 주민의견서 없음

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-31호

신규 항만기본계획(진촌항)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
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“신규 항만 기본계획(진촌항)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”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1월 09일
해양수산부장관

가. 계획의 개요

- 계획명 : 신규 항만 기본계획(진촌항)
- 계획수립권자 : 해양수산부장관
- 계획기간 : 2024년 ~ 2030년
- 대상항만 : 진촌항 (경상남도 통영시 사랑면 금평리 일원)

나.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

- 공람기간 : 2024년 01월 09일 ~ 02월 05일
- 공람장소 : 통영시 항만개발과, 사랑면사무소
- 주민설명회 : 2024년 01월 16일 10:30, 사랑면사무소 2층 회의실

다. 주민등의 의견제출 방법

- 제출기간 :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
- 제출방법 : 공람장소에 준비된 주민의견서 제출양식으로 서면 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www.eiass.go.kr)에서 의견 등록
- 제출의견 : 계획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,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

라. 기타 문의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(044-200-5919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해양수산부 홈페이지(www.mof.go.kr)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www.eiass.go.kr)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및 요약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(그림 1-1) 공고문

경향신문

고

현저히 곤란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
☎1544-0009) 바랍니다.
너소가 불명한 토지

구분	토지소유주	대상토지
148	박희기	부산광역시 사상구 삼학동 412-1
149	최상현	부산광역시 사상구 삼학동 412-1
150	백순산	부산광역시 사상구 삼학동 412-1
151	장재홍	부산광역시 사상구 삼학동 417-10
152	정진연	부산광역시 사상구 삼학동 417-10
153	김영희	부산광역시 사상구 삼학동 417-10
154	임용생	부산광역시 사상구 삼학동 417-10
155	유신재	부산광역시 사상구 삼학동 417-10
157	김영희	부산광역시 사상구 과월동 190-120
158	김성근	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405-101
159	이민숙	부산광역시 서구 대신동3가 31-164
160	최태운	부산광역시 서구 대신동3가 31-164
161	전창명	부산광역시 서구 대신동3가 31-133
162	정인태	부산광역시 서구 대신동3가 31-133
163	조동근	부산광역시 서구 대신동3가 31-164
164	임광순	부산광역시 서구 대신동3가 31-164
165	윤종성	부산광역시 서구 대신동3가 31-164
166	김석진	부산광역시 서구 함평동 330-8
167	김홍주	부산광역시 수영구 함미동 802-43
168	김신자	부산광역시 수영구 함미동 802-43
169	이영수	부산광역시 수영구 함미동 802-22
170	김소희	부산광역시 수영구 함미동 802-40
171	표준자	부산광역시 수영구 함미동 802-42
172	최두이	부산광역시 수영구 함미동 802-42
173	김태순	부산광역시 수영구 함미동 802-42
174	김차근	부산광역시 수영구 함미동 802-42

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-31호

신규 항만기본계획(진촌항)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「신규 항만 기본계획(진촌항)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」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1월 09일
해양수산부장관

가. 계획의 개요

- 계획 명 : 신규 항만 기본계획(진촌항)
- 계획수립권자 : 해양수산부장관
- 계획 기 간 : 2024년 ~ 2030년
- 대 상 항 만 : 진촌항 (경상남도 통영시 사랑면 금평리 일원)

나.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

- 공 람 기 간 : 2024년 01월 09일 ~ 02월 05일
- 공 람 장 소 : 통영시 항만개발과, 사랑면사무소
- 주민설명회 : 2024년 01월 16일 10:30, 사랑면사무소 2층 회의실

다. 주민등의 의견제출 방법

- 제출기간 :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
- 제출방법 : 공람장소에 준비된 주민의견서 제출양식으로 서면 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www.eiass.go.kr)에서 의견 등록
- 제출의견 : 계획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,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

라. 기타 문의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(044-200-5919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해양수산부 홈페이지(www.mof.go.kr)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www.eiass.go.kr)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및 요약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가칭)개급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추진!

재건축사업 협

가칭)개급주공2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
되는 업무일체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

1. 사업개요 : 가. 사 업 명 : 개급주공2
나. 위 치 : 부산광역시
다. 구역면적 : 83,328.6㎡
2. 입찰 및 선정업체 : 가. 행정컨설팅업체
3. 입찰 및 선정방법 : 각 협력업체별 입
4. 입찰자격 : 가. 각 협력업체별 현장 설명회에 참석
5. 현장설명회의 장소 및 일시 : 가. 장 소 : 가칭)재건축추진위원회
나. 날 짜 : 컨설팅업체 (PM) : 2024
도시계획업체 : 2024년 0
6. 입찰서 제출마감 : 가. 컨설팅업체 (PM), 도시계획업체, .
7. 제출방법 : 가칭)재건축추진위원회 사
8. 선정방식 : 적격심사방식 (추진위원회
9. 제출서류 : 가. 사업자등록증사본 나
다. 사업실적 현황
10.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: 국토교통부 고시 2023-302호 정비사(가칭)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정한 규
11. 기타사항 : 가. 참여업체는 가칭)재건축추진위원
없으며, 허위사실이 있었시 입찰지
나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
다. 문의 및 연락처 : 가칭)개급주공2
(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로

20
가칭)개급주공2단

경남도민일보

**오늘도
경남도민일보**

구독문의 250-0114
광고문의 250-0106
기사제보 250-0140

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-31호

신규 항만기본계획(진촌항)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「신규 항만 기본계획(진촌항)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」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1월 09일
해양수산부장관

가. 계획의 개요

- 계획 명 : 신규 항만 기본계획(진촌항)
- 계획수립권자 : 해양수산부장관
- 계획 기 간 : 2024년 ~ 2030년
- 대 상 항 만 : 진촌항 (경상남도 통영시 사랑면 금평리 일원)

나.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

- 공 람 기 간 : 2024년 01월 09일 ~ 02월 05일
- 공 람 장 소 : 통영시 항만개발과, 사랑면사무소
- 주민설명회 : 2024년 01월 16일 10:30, 사랑면사무소 2층 회의실

다. 주민등의 의견제출 방법

- 제출기간 :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
- 제출방법 : 공람장소에 준비된 주민의견서 제출양식으로 서면 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www.eiass.go.kr)에서 의견 등록
- 제출의견 : 계획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,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

라. 기타 문의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(044-200-5919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해양수산부 홈페이지(www.mof.go.kr)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www.eiass.go.kr)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및 요약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**법무사
박현묵
사무소**

**개인회생·파산
전문**

개인회생위원, 파산관재인 역임

창원시 성산구 창미대로 695 더원빌딩 601호
055)262-1111

(그림 1-2) 신문광고

해양수산부 홈페이지

해양수산부
정보공개
민원·참여
알림·뉴스
정책자료
기관소개

통합검색
▼ 검색어를 입력하세요.

🔍

🏠
알림·뉴스
알림
공지사항
🔊

알림·뉴스

- 알림
- 공지사항
- 입찰
- 인사
- 채용·공모
- 이벤트 및 공모전
- 뉴스 +
- 일자리 정보 +
- 해양수산물발사능 정보 +

공지사항

신규 항만 기본계획(진촌항)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

부서	항만정책과	담당자	최영중	전화번호	044-200-5919
등록일	2024.01.09.	조회수	17		
첨부파일	📄 공고문.html 👁 미리보기				
	📄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진촌항) 초안 요약본.pdf 👁 미리보기				

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-31호

신규 항만기본계획(진촌항)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“신규 항만 기본계획(진촌항)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”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1월 09일
해양수산부장관

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

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

사업명을 입력하세요.

🔍

👤 간월 님 00:58:02
🔒 로그인
👤 개인정보수정

- 환경영향평가소개
- 사업조회 및 정보입력
- 협의통계
- 국민참여
- 건강영향평가

PUBLIC PARTICIPATION

EIASS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

👤 국민참여
📄 평가서 초안 공람

국민참여
평가서 초안 공람

- 협의진행현황
-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
- 평가서 초안 공람
- 행정처분현황
- 사용자지원

평가서 초안 공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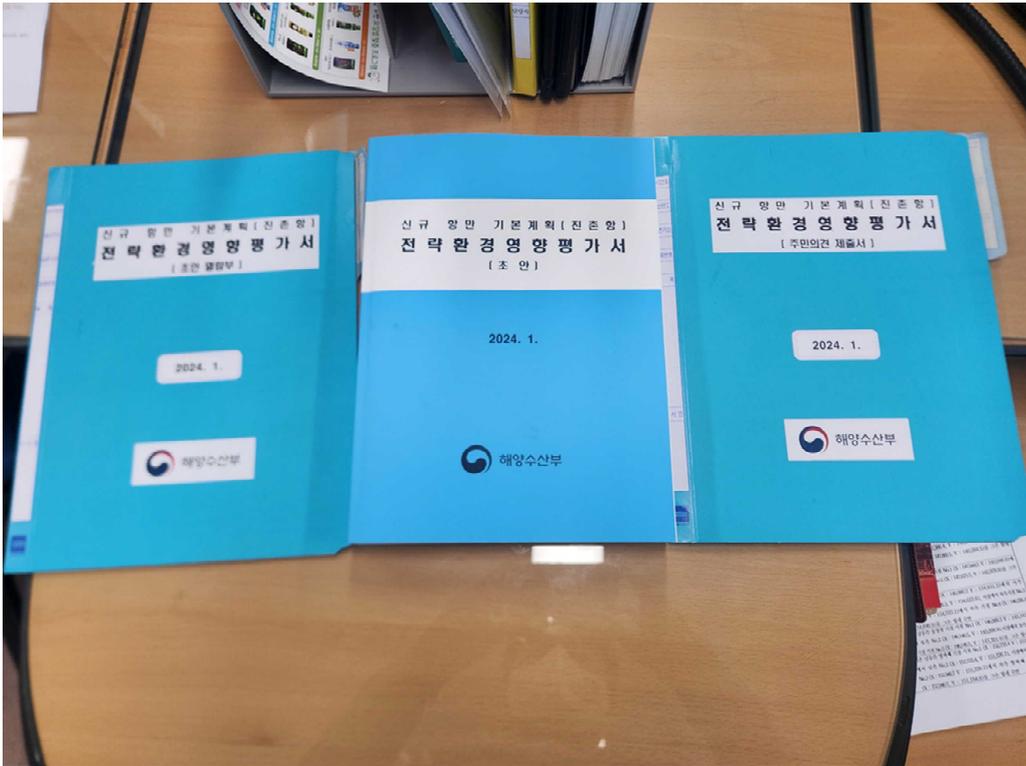
전략환경영향평가

사업명	신규 항만 기본계획(진촌항)		
사업위치	면적		
	소재지	면적	
	경상남도 창원시 사당면 규평리 (49필지 64-92) 일원		20,872㎡
협의대상 (협의관련법령)	행정계획 [항만법]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		
사업구분	항만건설 / 항만기본계획		
사업개요	사업시행자 : 해양수산부장관 승인기관 : 해양수산부장관 사업규모 : 20872㎡ 사업비 : 0 억원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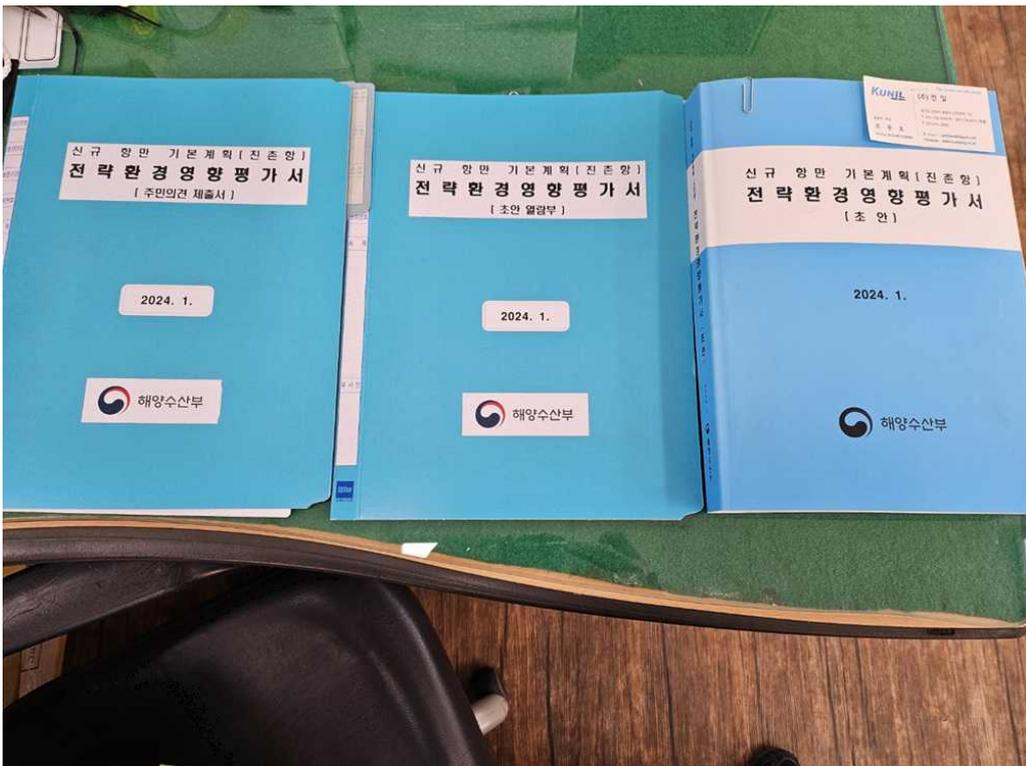
초안공람
주인의견수원

(그림 1-3) 공고·공람 사실 게시

통영시 항만개발과(現 건설과)



사랑면사무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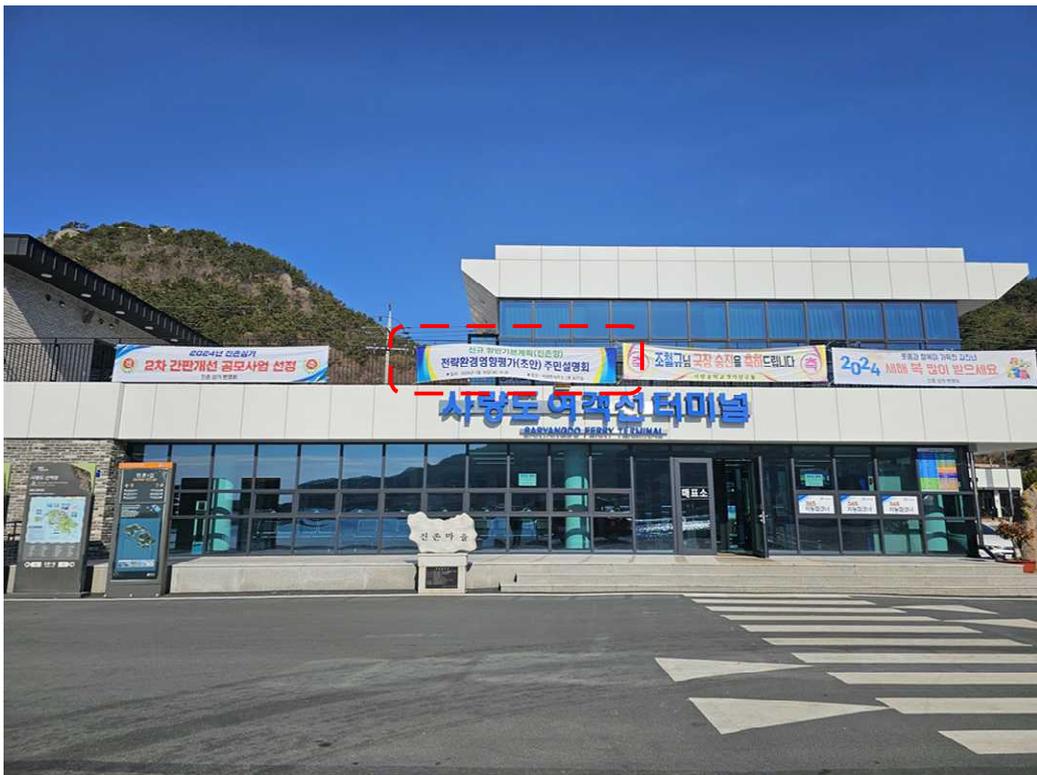


(그림 1-4) 공람장소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비치

사랑면사무소



사랑도 여객선터미널



(그림 1-5) 현수막 설치



(그림 1-6) 주민설명회 개최

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

계획명	신규 항만 기본계획(진촌항)			
위 치	경상남도 통영시 사랑면 금평리 일원			
설명회 일시	2024. 01. 16.(화) 10:30	설명회 장소	사랑면사무소	
번호	성 명	주 소	서 명	비고
1	한	[Redacted]		
2	주			
3	진			
4	현			
5	이			
6	김			
7	최			
8	유			
9	심			

(그림 1-7)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(1/2)

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

계획명	신규 항만 기본계획(진촌항)			
위 치	경상남도 통영시 사랑면 금평리 일원			
설명회 일시	2024. 01. 16.(화) 10:30	설명회 장소	사랑면사무소	
번호	성 명	주 소	서 명	비고
1	김			
2	김			
3	김			
4	차			
5	김			
6	김			
7	김			
8	이			
9	김			
10	김			
11	정			
12	김			
13	김			
14	조			

(그림 1-8)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(2/2)

3.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결과

가. 환경부 검토의견

구 분	검토의견	반영 결과 및 미반영 사유
1. 총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검토의견은 진촌항 항만기본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서(초안, 이하 ‘초안’)에 대한 것으로, 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작성 시 아래의 세부 검토의견을 충실히 검토·반영하여야 함 ○ 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은 「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 고시)」 및 본 검토의견에 따라 작성하되, 영향 예측평가 시 산정 과정과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반영)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검토의견을 충실히 검토·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에 반영하겠음 ○ (반영) 「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)」 및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를 작성하고, 영향 예측평가 시 산정 과정, 근거자료를 제시하겠음
2. 세부 검토의견 가. 계획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 ○ (수요·공급 대안 검토) 동 항만 신규시설 계획 중 여객부두(30m)와 차도선부두(90m)가 포함되어 있으나, 2040년까지 여객 수송량은 1% 미만으로 예상되고, 차도선의 여객, 차량, 화물 수송량 증가율도 높지 않으며 월간 최고 수송량을 고려하더라도 1개 선석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는 등(초안 414~415쪽), 여객·차도선 부두 증설계획의 적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 증설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요·공급 대안을 확대, 검토하거나 동 계획의 축소 등 복수의 대안을 비교, 분석한 자료제시 필요 ○ (방파제 연장 검토) 현재 항만 내 해수 교환은 매우 안 좋은 상태이며 항내 동측 최강유속은 0~2cm/s(초안 319쪽)로 정체 해역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 계획이 해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여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획 대상지 내·외측(방파제와 부두 건설 예정지점)을 대상으로 해수교환을 실험을 실시, 방파제 및 부두 증설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근거한 시설 증설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 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반영) 본 계획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및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적인 대안을 분석·제시하겠음 ○ (반영) 계획시행시 해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추가 검토·제시하겠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 계획에 대한 대안을 추가 설정하고, 수치모형실험을 실시하여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 예측 및 시설 증설의 적절성을 제시토록 하겠음

(계 속)

구 분	검토의견	반영 결과 및 미반영 사유
<p>나. 입지의 타당성</p>	<p>□ 자연환경의 보전</p> <p>○(항내 해양환경분석) 항내 부두, 방파제 등을 건설할 계획으로 항내 해양수질 및 퇴적물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제시한 SW, SG-2 지점(초안 241쪽) 이외에 항내 가장 내측 지역 2지점을 조사지점으로 추가 선정, 조사하여야 함</p>	<p>○(반영) 항내 해양수질 및 퇴적물 조사 2개 정점을 추가 조사하여 제시토록 하겠음</p>
	<p>○(해수유통방안) 동 계획 시행 후 해수 교환율은 현재 대비 약 14.3% 감소(초안 333쪽)하는 반면, 항만 개발로 인한 재적어선 증가와 관광객 이용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(초안 412~417쪽)에 따라 항만 내부 오염물질을 해소하기 위한 해수유통 방안(신규 외곽시설 해수 유통구 설치, 외곽시설 위치 변경에 따른 해수 유통량 확보 등)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</p>	<p>○(반영) 항만 내부 오염물질을 해소하기 위한 해수유통 방안을 검토·제시하겠음</p>
	<p>○(준설구역 조사) 준설대상지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고(초안 154쪽), 본 대상지를 포함한 해역에서 해양보호생물인 대추귀 고등과 게바다말의 출현이 보고된 것으로 제시된 바(초안 194쪽), 준설대상지 내외(조간대·조하대 포함)에 서식하는 생물 현황을 조사·제시하여야 함. 끝.</p>	<p>○(반영) 문헌조사를 통해 확인된 해양보호생물에 대하여 현지조사시 선박 이용 및 도보로 이동하며 조사한 결과 해양보호생물의 출현은 확인되지 않았으나,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조사를 계획하였음</p> <p>- 준설대상지 내외를 포함한 항내 해양보호생물 추가 조사 실시(잠수조사 병행)</p>

나. 경상남도 검토의견

구 분	검토의견	반영 결과 및 미반영 사유
환경관리 담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6조에 해당할 경우 관련 기관에 협의를 거쳐야 함. -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'환경영향평가의 대상' -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'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'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반영) 금회 항만기본계획 수립 후 항만 공사 실시계획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건설자재는 저탄소,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친환경 녹색제품(환경표지, 우수재활용제품)을 구매·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반영)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(GR마크) 및 환경마크 등을 획득한 친환경 인증제품의 사용을 적극 권장토록 환경보전대책을 마련하였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·시행할 것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반영) 항목별 적정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겠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,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행정 기관 및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피해예방 및 추가 저감 방안을 마련·시행하고,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반영)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피해 및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과 협의를 거쳐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획수립 과정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 동 협의내용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·시행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사전에 저감될 수 있도록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해당없음) - 환경영향평가 협의, 관련법에 따른 인·허가 및 승인 후 실시되는 사후환경영향조사 단계에서 시행하는 사항임
자연보전 담당	<p>〈 자연환경 분야 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향후 사업시행시 사업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자연생태현황을 조사하여 지형훼손을 최소화 하고,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·시행할 것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반영) 본 계획수립 시 지형훼손을 최소화 하고,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등급권역별로 해당 기준을 고려하여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반영) 생태·자연도 등급 권역별 기준을 고려하여 계획을 시행토록 하겠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다음에 해당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 46조에 의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므로 인·허가 등을 한 경우 20일 이내에 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. -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-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-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해당없음) - 본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나 계획규모가 3만㎡ 미만이므로 현 단계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(계 속)

구 분	검토의견	반영 결과 및 미반영 사유
자연보전 담당	< 야생동물·습지 분야 > ○ 문헌 및 현지조사 시 확인된 법정보호종(수달, 황조롱이, 팔색조 등)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.	○ (기 반영) 계획대상지 주변지역으로 출현이 확인된 법정보호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보전대책을 마련하였음
	○ 사업시행 전 법정보호종(멸종위기종) 서식여부에 대하여 법적 검토사항 외 추가적인 면밀한 검토(지역 환경전문가 의견 및 주민 목격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서식여부 확인)를 하여 서식지 등 훼손이 없도록 하여야 함.	○ (기 반영) 문헌조사 실시 및 전문 조사원을 통한 현지조사, 현지조사시 탐문조사를 병행 실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법정보호종 유무를 조사하였음 한편, 법정보호종에 대한 서식처 보호, 수질 오염물질 유입 방지 등 환경보전대책을 마련하여 법정보호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함
	○ 사업 시행시 주변환경 변화, 야생생물의 서식지 영향여부 및 번식·산란시기 등을 고려한 공사계획 수립하고,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 발견시 신속한 조치 및 서식지 보호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.	○ (기 반영) 본 계획시행시 단계적인 공사를 실시토록 하고, 전면적인 시행보다 최소한의 범위로 구간을 나누어 시행함으로써 교란의 강도를 최소화하였음
	○ 사업 구간내 식생 조사 시, 생태계교란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과정에서 인위적 확산과 식생변화 예방을 위한 사전 제거·관리대책이 검토되어야 함.	○ (해당없음) - 본 계획은 공유수면에 계획되어 육상식물상 및 식생이 분포하지 않음
자원순환 담당	○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적절히 예측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, 폐기물 종류별 처리 및 재활용 계획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환경영향 예측한 결과에 따라 폐기물 발생 사전 예방 및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 방안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.	○ (기 반영) 공사시 공사인원에 의한 생활 폐기물 및 분노 발생이 예상되며, 통영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토록 환경보전 대책을 마련함
	○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등의 정부 폐기물 처리정책 및 해당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 시책을 적극 반영하고,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발생 최소화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여야 함.	○ (기 반영) 공사현장 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분리수거하고 최대한 재활용 후 위탁처리토록 함

(계 속)

구 분	검토의견	반영 결과 및 미반영 사유
자원순환 담당	○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「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3조의 처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,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“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”에 해당되는 경우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준수하여야 하고, 동법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,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여야 함.	○(기 반영) 본 계획시행시 발생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토록 계획함 한편, 본 계획은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순환골재 의무 사용 건설공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
	○ 공사 시 훼손되는 임목에 대해서는 조경수, 원목자재, 연료목재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하여야 하며 임목폐기물로 처리되는 양을 최소화하여야 함.	○(해당없음) - 본 계획은 공유수면에 계획되어 훼손수목이 발생하지 않음
수질정책 담당	○ 사업 계획지 내 지하수 이용 현황을 확인하여 향후 관정 폐공 또는 개발·이용시 지하수 수질오염 및 수위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수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것	○(해당없음) - 본 계획은 지하수 수질오염 및 수위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는 계획임
수질보전 담당	○ 「물환경보전법」 제15조에 따라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, 토사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지 않아야 하며, 공공수역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강구, 이행하여야 함	○(기 반영) 본 계획시행시 발생 준설토는 광양 준설토 투기장 1단계로 계획하였으며, 향후 실시계획 수립시 투기장 관리주체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사업 착공 전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함
	○ 「물환경보전법」에서 규정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, 사전에 통영시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	○(해당없음) - 폐수배출시설 설치 계획 없음
녹조대응 파트	○ 계획에 따른 향후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, 퇴적물 등의 오염물질 및 유류 유출, 운영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하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, 「물환경보전법」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비점오염저감 대책 수립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	○(반영) 향후 실시설계 단계인 환경영향 평가시 계획대상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함

(계 속)

구 분	검토의견	반영 결과 및 미반영 사유
상수도담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시설계 시 항만 정비로 인한 급수단절 등 급수 피해가 없도록 사업구역 내 상수관로 매설 현황 등을 조사하여 통영시 상수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(해당없음) - 본 계획시설은 모두 공유수면으로 계획되어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이 입지하지 않는 지역임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수도 공급 계획 시 해당 통영시 상수도 부서와 협의하여 의견 반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(해당없음) - 항만시설 외 별도 상수 공급을 요하는 시설물 설치 계획은 없음
하수도담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하수도법에 따른 '하수도정비기본계획'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통영시 하수도부서와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시기 바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(해당없음) - 계획시행으로 인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은 불필요함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」 제5조, 제6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 설치권고에 해당되는 경우 통영시 하수도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(해당없음) - 관련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 설치 권고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오수 등 하수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(반영) 공사시 공사인원에 의해 발생이 예상되는 분뇨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함 - 주변 공공화장실 등 이용(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)



환 경 부

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검토의견 알림(진촌항 항만기본계획)

1. "진촌항 항만기본계획"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우리부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,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아울러, 한국환경연구원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검토의견 1부. 끝.

환 경 부



수신자 해양수산부장관(항만정책과장), 한국환경연구원장

전결 2024. 2. 2.

해적시무과 과장

협조자

시행 환경영향평가과-416 접수 항만정책과-503 (2024. 2. 2.)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/ http://me.go.kr

전화번호 044-201-7301 팩스번호 044-201-7235 / eeeah24@me.go.kr / 대국민 공개

(그림 3-1)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검토의견 - 환경부(1/3)

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검토의견 【진촌항 항만기본계획】

I. 사업개요

- 위 치 : 경상남도 통영시 사랑면 금평리 일원
- 계획규모 : 계획면적 20,872㎡(기존시설 14,354㎡, 신규시설 6,518㎡)
매립면적 6,518㎡, 준설면적 13,930㎡, 준설량 34,800㎥
- 계획수립 / 승인기관 : 해양수산부장관
- 협의근거 :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 [별표2]
- 「항만법」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

II. 검토의견

1. 총 괄

- 본 검토의견은 진촌항 항만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, 이하 '초안')에 대한 것으로, 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작성 시 아래의 세부 검토의견을 충실히 검토·반영하여야 함
- 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은 「환경영향평가법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)」 및 본 검토의견에 따라 작성하되, 영향 예측·평가 시 산정 과정과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

2. 세부 검토의견

가. 계획의 적정성

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

- (수요·공급 대안 검토) 동 항만 신규시설계획 중 여객부두(30m)와 차도선부두(90m)가 포함되어 있으나, 2040년까지 여객 수송량은 1% 미만으로 예상되고, 차도선의 여객, 차량, 화물 수송량 증가율도 높지

- 1 -

(그림 3-2)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검토의견 - 환경부(2/3)

않으며 월간 최고 수송량을 고려하더라도 1개 선석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는 등(초안 414~415쪽), 여객·차도선 부두 증설 계획의 적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

- 동 증설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요·공급 대안을 확대, 검토하거나 동 계획의 축소 등 복수의 대안을 비교, 분석한 자료제시 필요
- (방파제 연장 검토) 현재 항만 내 해수교환은 매우 안 좋은 상태이며 항내 동측 최강유속은 0~2cm/s(초안 319쪽)로 정체해역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 계획이 해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여야 함
- 계획 대상지 내·외측(방파제와 부두 건설예정지점)을 대상으로 해수 교환을 실험을 실시, 방파제 및 부두 증설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근거한 시설 증설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 제시

나. 입지의 타당성

□ 자연환경의 보전

- (항내 해양환경분석) 항내 부두, 방파제 등을 건설할 계획으로 항내 해양수질 및 퇴적물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제시한 SW, SG-2 지점(초안 241쪽) 이외에 항내 가장 내측 지역 2지점을 조사 지점으로 추가 선정, 조사하여야 함
- (해수유통방안) 동 계획 시행 후 해수 교환율은 현재 대비 약 14.3% 감소(초안 333쪽)하는 반면, 항만 개발로 인한 재적어선 증가와 관광객 이용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(초안 412~417쪽)에 따라 항만 내부 오염 물질을 해소하기 위한 해수유통 방안(신규 외곽시설 해수 유통구 설치, 외곽 시설 위치 변경에 따른 해수 유통량 확보 등)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
- (준설구역 조사) 준설대상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이고(초안 154쪽), 본 대상지를 포함한 해역에서 해양보호생물인 대추귀고둥과 게바다말의 출현이 보고된 것으로 제시된 바(초안 194쪽), 준설대상지 내외(조간대·조하대 포함)에 서식하는 생물 현황을 조사·제시하여야 함. 끝.

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



경 상 남 도



수신 해양수산부장관(항만정책과장)

(경유)

제목 신규 항만 기본계획(진촌항)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제출

1.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-96호(2024.1.5)와 관련입니다.
2. 통영시 사랑면 일원에 시행 중인 진촌항 항만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붙임 검토의견서 1부. 끝.

경 상 남 도



주요과 해양개발과 담당: 해양정책과장 전결 2024. 2. 13.

협조자 주무관 김동규

시행 해양항만과-2004 (2024. 2. 13.) 접수 항만정책과-605 (2024. 2. 13.)

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, 경남도청 해양항만과 / <http://www.gyeongnam.go.kr>

전화번호 055-211-3944 팩스번호 055-211-3919 / pyc2769@korea.kr / 비공개

반부패 3無 운동(적부관련자와 식사·선물·갑질 안하기), 우리 모두 동참합니다.

(그림 3-4)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검토의견 - 경상남도(1/3)

진촌항 항만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검토의견

담당	검토 및 협의 의견
환경관리담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6조에 해당할 경우 관련 기관에 협의를 거쳐야 함. -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'환경영향평가의 대상' -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'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' ○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건설자재는 저탄소,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친환경 녹색제품(환경표지, 우수재활용제품)을 구매·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. ○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·시행할 것. ○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,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행정기관 및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피해예방 및 추가 저감 방안을 마련·시행하고,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함. ○ 계획수립 과정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정적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 동 협의내용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·시행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사전에 저감될 수 있도록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함.
자연보전담당	<p>< 자연환경 분야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향후 사업시행시 사업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자연생태현황을 조사하여 지형훼손을 최소화하고,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·시행할 것. ○ 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등급권역별로 해당 기준을 고려하여야 함. ○ 다음에 해당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므로 인허가 등을 한 경우 20일 이내에 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-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-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<p>< 야생동물·습지 분야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헌 및 현지조사 시 확인된 법정보호종(수달, 황조롱이, 팔색조 등)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. ○ 사업시행 전 법정보호종(멸종위기종) 서식 여부에 대하여 법적 검토사항 외 추가적인 면밀한 검토(지역 환경전문가 의견 및 주민 목격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서식여부 확인)를 하여 서식지 등 훼손이 없도록 하여야 함. ○ 사업 시행시 주변환경 변화, 야생생물의 서식지 영향여부 및 번식,산란시기 등을 고려한 공사계획 수립하고,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 발견시 신속한 조치 및 서식지 보호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. ○ 사업 구간내 식생 조사 시, 생태계교란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과정에서 인위적 확산과 식생변화 예방을 위한 사전 제거,관리대책이 검토되어야 함.

(그림 3-5)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검토의견 - 경상남도(2/3)

담당	검토 및 협의 의견
<p>자원순환담당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적절히 예측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, 폐기물 종류별 처리 및 재활용 계획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환경영향 예측한 결과에 따라 폐기물 발생 사전예방 및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 방안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. ○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등의 정부 폐기물 처리정책 및 해당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 시책을 적극 반영하고,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발생 최소화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여야 함. ○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3조의 처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,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“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”에 해당되는 경우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준수하여야 하고, 동법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,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여야 함. ○ 공사 시 훼손되는 임목에 대해서는 조경수, 원목자재, 연료목재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하여야 하며 임목폐기물로 처리되는 양을 최소화 하여야 함.
<p>수질정책담당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계획지 내 지하수 이용 현황을 확인하여 향후 관정 폐공 또는 개발·이용시 지하수 수질오염 및 수위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수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것
<p>수질보전담당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물환경보전법」 제15조에 따라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, 토사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지 않아야 하며, 공공수역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강구, 이행하여야 함 ○ 「물환경보전법」에서 규정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, 사전에 통영시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
<p>녹조대응파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획에 따른 항후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, 퇴적물 등의 오염물질 및 유류 유출, 운영 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하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, 「물환경보전법」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비점오염저감대책 수립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
<p>상수도담당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시설계 시 항만 정보로 인한 급수단절 등 급수 피해가 없도록 사업구역 내 상수관로 매설 현황 등을 조사하여 통영시 상수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○ 상수도 공급 계획 시 해당 통영시 상수도부서와 협의하여 의견 반영
<p>하수도담당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하수도법에 따른 '하수도정비기본계획'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통영시 하수도부서와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시기 바람 ○ 「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」 제5조, 제6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 설치권고에 해당되는 경우 통영시 하수도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람 ○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오수 등 하수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

(그림 3-6)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검토의견 - 경상남도(3/3)